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908

발의연월일: 2024. 8. 16.

발 의 자:황 희·안규백·한민수

강선우 • 이용선 • 어기구

박 정・민홍철・이훈기

안태준 · 조 국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와 관련한 조사권 및 고발권이 있으며,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할 것을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도 있음.

그런데 스포츠윤리센터는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을 뿐 징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해당 체육단체에 있어 실제 징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, 징계 처리를 하더라도 불문, 견책 등으로 그 수위가 상당히 약한실정임. 또한, 스포츠윤리센터라는 기관 명칭이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, 수사기관에 고발 등 고유업무의 특성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주로 상담만을 전담으로 하는

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'스포츠윤리센터'의 명칭을 '스포츠윤리조사원'으로 변경하고, 스포츠윤리조사원의 조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며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 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징계를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포츠윤리센터가 스 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제2항, 제18조의3, 제18조의4 등). 법률 제 호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항 중 "스포츠윤리센터"를 "스포츠윤리조사원"으로 한다.

제18조의3의 제목 중 "스포츠윤리센터의"를 "스포츠윤리조사원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스포츠윤리센터를"을 "스포츠윤리조사원을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스포츠윤리센터는"을 각각 "스포츠윤리조사원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스포츠윤리센터의"를 각각 "스포츠윤리조사원의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스포츠윤리센터의"를 "스포츠윤리조사원의"로, "스포츠윤리센터 파견"을 "스포츠윤리조사원 파견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"스포츠윤리센터가"를 "스포츠윤리조사원이"로, "스포츠윤리센터 또는"을 "스포츠윤리조사원 또는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"스포츠윤리센터는"을 "스포츠윤리조사원은"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스포츠윤리센터는"을 "스포츠윤리조사원은"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스포츠윤리센터는"을 "스포츠윤리조사원이"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 중 "스포츠윤리센터가"를 "스포츠윤리조사원이"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 중 "스포츠윤리센터"를 "스포츠윤리조사원이"로 한다.

제18조의4제1항 중 "스포츠윤리센터"를 "스포츠윤리조사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스포츠윤리센터"를 "스포츠윤리조사원"으로 한다.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스포츠윤리센터는"을 "스포츠윤 리조사원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"스포츠윤리센터는"을 "스포츠윤리조사원은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스포츠윤리센터는"을 "스포츠윤리조사원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"스포츠윤리 센터는"을 "스포츠윤리조사원은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7항) 중 "조사의 기간, 절차 등에 관하여"를 "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사와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에"로, "사항은"을 "구체적인 사항은"으로 한다.

⑦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·내용 또는 결과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스포츠윤리조사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, 스포츠윤리조사원은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8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"스포츠윤리센터의"를 "스포츠윤리조사원의"로 한다.

제18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스포츠윤리센터의"를 "스포츠윤리조사원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스포츠윤리센터가"를 "스포츠윤리조사원이"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"스포츠윤리센터의"를 "스포츠윤리조사원의"로 한다.

제18조의9제1항 중 "스포츠윤리센터는"을 "스포츠윤리조사원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스포츠윤리센터는"을 "스포츠윤리조사원은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징계할 것을 요구 받은 체육단체가 징계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해당 징계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체육단체에 다시 요구할 수 있다.

제18조의10제3항 중 "스포츠윤리센터"를 "스포츠윤리조사원"으로 한다.

제22조제1항제10호 중 "스포츠윤리센터"를 "스포츠윤리조사원"으로 한다.

제46조의3제1호 중 "스포츠윤리센터의"를 "스포츠윤리조사원의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스포츠윤리센터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스포츠윤리센터는 이 법에 따른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본다.
 - ② 이 법 시행 당시 스포츠윤리센터의 명의로 행한 행위,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이 법에 따른 스포츠윤리조사원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	제18조(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
에 대한 보조) ① (생 략)	에 대한 보조) ① (현행과 같
	음)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	②
한체육회, 지방체육회, 대한장	
애인체육회, 지방장애인체육회,	
한국도핑방지위원회, 서울올림	
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, <u>스포</u>	<u>슬</u>
<u> 츠윤리센터</u> , 그 밖의 체육단체	포츠윤리조사원
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	
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	
부를 보조한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8조의3(스포츠윤리센터의 설	제18조의3(스포츠윤리조사원의
립) ①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	설립) ①
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	
<u>스포츠윤리센터를</u> 설립한다.	스포츠윤리조사원을
② 스포츠윤리센터는 법인으로	② 스포츠윤리조사원은
한다.	
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	③ 스포츠윤리조사원은
호의 사업을 한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④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, 이	④ 스포츠윤리조사원의

사회의 구성 및 권한, 임원의 선임, 감독 등 <u>스포츠윤리센터</u> 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
- ⑤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・단체 소속 임직원의 스포츠윤리센터 파견 또는 지원을 요청할수 있다.
- ⑥ <u>스포츠윤리센터가</u> 아닌 자는 <u>스포츠윤리센터 또는</u> 이와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- ⑦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. 이 경 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 츠윤리센터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 고 보장하여야 한다.
- 8 <u>스포츠윤리센터에</u> 관하여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

스포츠윤리조사 원의
 ⑤ <u>스포츠윤리조사원의</u>
스포츠윤리조사 <u>원 파견</u>
 ⑥ <u>스포츠윤리조사원이</u> <u>스포츠윤리조사원 또는</u>
 ⑦ <u>스포츠윤리조사원은</u>
8 <u>스포츠윤리조사원에</u>

한 규정을 준용한다.

- 제18조의4(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) ① 누구든 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 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 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
 - ② 체육지도자, 선수, 제18조의 14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
 - ③ (생략)

제18조의5(인권침해 등의 조사)

- ① <u>스포츠윤리센터는</u>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있다.
 - 1. ~ 3. (생략)
 - ② · ③ (생 략)
 - ④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

	<u>.</u>
제	18조의4(체육계 인권침해 및
	스포츠비리의 신고) ①
	<u>스</u>
	포츠윤리조사원
	②
	스포츠윤리조사원
	· ③ (현행과 같음)
제	18조의5(인권침해 등의 조사)
	① 스포츠윤리조사원은
	1. ~ 3. (현행과 같음)
	②·③ (현행과 같음)
	④ 스포츠유리주사워은

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 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 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사의 방법,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.

- ⑤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8조의 3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으면 곧바로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사하여야 한다.
- ⑥ <u>스포츠윤리센터는</u>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⑤ 스포츠윤리조사원은
,
⑥ 스포츠윤리조사원은
⑦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
조사의 절차・내용 또는 결과
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스포
츠윤리조사원에 이의를 신청할
수 있고, 스포츠윤리조사원은
이의신청을 접수하면 이를 심
사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

⑦ 조사의 기간,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 관광부렁으로 정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18조의8(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)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선수, 체육지도자,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선수, 체육지도자,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관련자들의 소속 기관·단

통지하여야 한다.
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
른 조사와 제7항에 따른 이의
<u>신청에</u> 구체적인 사항은
제18조의7(신고자등의 보호) <u>스포</u>
<u> </u>
<u>.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18조의8(위반행위 등에 대한
조치) 스포츠윤리조사원의

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또는 책임자의 징계 등을 하도록 요 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또는 징 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 당 소속 기관·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, 요구를 받은 기관·단체는 정당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1.·2. (생 략)

- 3. 정당한 사유 없이 <u>스포츠윤</u> 리센터가 요구하는 보고서 또 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 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- 4. 정당한 사유 없이 <u>스포츠윤</u> 리센터의 조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 우

5. (생략)

제18조의9(고발 및 징계요구) ① 저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·상담 및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3스포츠윤
리조사원이
4 <u>스포츠</u>
<u>리조사원의</u>
5. (현행과 같음)
9. (연영과 설름) 제18조의9(고발 및 징계요구) ①
<u>스포츠윤리조사원은</u>

③ <u>스포츠윤리센터는</u> 조사내용 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,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 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<신 설>

제18조의10(신고·상담 및 임시 저 보호 시설의 설치 등) ①·② (생 략)

- ③ <u>스포츠윤리센터</u> 및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신고·상담 업 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.
- 제22조(기금의 사용 등) ① 국민 지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,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

	③ 스포츠윤리조사원은
	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
	항에 따라 징계할 것을 요구
	받은 체육단체가 징계 조치를
	하지 아니하면 해당 징계 조치
	를 할 것을 해당 체육단체에
	다시 요구할 수 있다.
세	18조의10(신고·상담 및 임시
	보호 시설의 설치 등) ①・②
	(현행과 같음)
	③ 스포츠윤리조사원
세	22조(기금의 사용 등) ①

원회법」	제14조의4에서	정하
는 바에	따라 사용한다.	

- 1. ~ 9. (생략)
- 10. 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지방장애인체육회, 한국도핑방지위원회,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체육 과학 연구기관, 스포츠 윤리센터 및 체육인재육성관련 단체의 운영·지원
- 11. · 12. (생략)
- ② ~ ④ (생 략)
- 제46조의3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「형법」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 - 1. <u>스포츠윤리센터의</u>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
 - 2. · 3. (생략)

 1. ~ 9. (현행과 같음) 10
<u></u>
<u> 츠윤리조사원</u>
11.·1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46조의3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
의제)
1. <u>스포츠윤리조사원의</u>
2.·3. (현행과 같음)